

의안번호	2202473
의 퇴 인	복기왕의원
회 답 일	2024. 9. 26.
추 계 번호	24D245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6억 5,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93억 1,500만원(연평균 178억 6,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평균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 (안 제25조)	11,655	20,400	20,808	20,616	15,836	89,315	17,863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3조의2 (유해의 조사·발굴 등)	-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하여 조사개시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있는 지역·무연분묘 등을 조사·발굴할 수 있음(제1항)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사료를 채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	안 제23조의3 (유전자 검사)	위원회는 희생자의 유해 신원과 그 가족의 확인을 위하여 발굴된 유해와 가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5조(조사기간)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 기간 연장(제1항) :(현행)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개정안)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5년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진실규명활동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변경(제2항)	의무규정
4	안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 또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	재량규정

	의무)	기 위한 적절한 조치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할 수 있음(제4항)	
5	안 제40조(진실화해재단 설립)	정부는 위령사업 및 사료관 운영·관리 등을 수행할 진실화해재단을 조사기간 만료 전에 설립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43조의3(손실보상)	-위원회는 조사·발굴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및 농작물·과수 등의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3조의2(유해의 조사·발굴 등)	-	미대상: 현행법 제23조제4항1)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해의 조사·발굴 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관련 예산인 진화위운영(1031-300) 세부사업 중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조사에 1,20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
2	안 제23조의3(유전자 검사)	-	미대상: 현행법 제23조제4항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유해의 조사·발굴 등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관련 예산인 진화위운영(1031-300) 세부사업 중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 조사에 1,20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 참고로, 제2기 위원회는 2023년부터 다음의 신원확인 사업을 추진중임 -신원확인 사업: 검체수집과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확대 ·검체수집 사업: 유전자감식 대비, 유해유가족 검사시료 수집 ·유전자감식 사업: 유해·유가족 검사시료 DNA검사 위탁
3	안 제25조(조사기간)	○	-
4	안 제33조(국가기관 등의 협조 의무)	×	지방자치단체가 조사개시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지원하게 될 예산 규모 및 지원 비율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5	안 제40조(진	×	현행법은 과거사연구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출

	실화해재단 설립)		연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이나, 개정안은 과거사연구재단을 진실화해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반드시 조사기간 만료일전에 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향후 설립될 진실화해재단의 조직 규모, 필요 인력, 사업 내용에 따른 사업비 등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참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따르면 과거사연구재단의 설립방안 및 운영 지침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2023년에 수행하였음
6	안 제43조의3 (손실보상)	×	희생자에 대한 유해·발굴로 인해 타인의 토지 등에 입힌 손실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현행법에 따른 조사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고, 개정안에 따라 연장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위원회의 조사기간은 최대 2029년 5월 26일까지임

○ 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여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고, 활동기간은 2025년 5월 26일까지임

– 현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은 2024년 5월 26일까지이나, 2024년 1월 현행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1년 연장하였음

□ 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로 구분하며, 위원회 운영비는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인건비·기본경비는 위원의 임기 및 종합보고서 작성일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함

○ 위원의 임기²⁾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한³⁾은 위원회 활동 종료일로부터 6개

1) 현행법 제23조(진실규명 조사방법) ④ 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진실규명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나 물건 또는 기관·시설 및 단체(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현행법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5조의 조사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 만료일 이후 6월이 되는 날 위원의 임기도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②, ③ (생략)

3) 현행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활동이 최종 종료될 경우 위원회는 6월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월 이후인 2029.11.26.임

- (위원회 운영비)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날(2029.5.26.)까지 발생
- (인건비, 기본경비) 조사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9.11.26.)까지 발생

○ 위원회의 청산에 필요한 경비⁴⁾ 및 종합보고서 작성 비용 등은 현행법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기간 연장에 따라 경비 차이가 크지 않다고 가정하여 추계에서 제외

-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인건비, 기본경비는 위원회의 2023년 예산 금액을 준용함⁵⁾
- 소비자물가상승률⁶⁾과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⁷⁾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최대 조사기간(2025.5.26.)과 개정안에 따른 최대 조사기간(2029.5.26.)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위원회 운영비) 개정안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위원회 운영비는 2025년 42억 9,8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307억 1,200만원으로 추계됨

4) 문서이관, 회계정리, 재산처분 등 기관폐지에 따른 비용으로, 2011년도 1기 위원회의 경우 9억 5,600만원이 소요되었음

5) 2024년 예산의 경우 당초 2024년 5월 위원회 운영이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2023년 예산을 준용함

6)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6	2.2	2.2	2.1	2.1	2.1	2.0

7)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024년 7월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 위원회 대외홍보, 진실규명조사비 등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비는 세부사업 진화위운영(1031-300)에 2023년 70억 2,9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 운영비는 2023년 1개월당 운영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위원회 운영비는 2025년은 7개월분을, 2029년은 5개월분을 추계함
 - 추계의 전제에 따른 위원회 조사기간(2025년 6월~2029년 5월)

[표 2]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1개월당 위원회 운영비	614	628	641	654	667	-
연장 개월 수	7	12	12	12	5	-
합 계	4,298	7,536	7,692	7,848	3,338	30,7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및 기본경비) 개정안에 따른 조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025년 인건비 37억 1,700만원, 기본경비 36억 4,0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건비는 총 292억 4,100만원, 기본경비는 총 293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 위원장, 상임위원, 별정직 등 직원 81명의 보수와 전문임기제 직원 26명의 보수 및 연가보상비 등을 포함한 인건비는 세부사업 진화위인건비(7001-150)에 2023년 60억 9,400만원이 편성됨
 - 위원회 인건비는 2023년 1개월당 인건비에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 기본경비는 세부사업 진화위기본경비(7002-250)에 2023년 59억 5,400만원이 편성됨
 - 기본경비는 2023년 1개월당 기본경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2025년은 7개월분을, 2029년은 11개월분을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위원의 임기 및 종합보고서 작성기한은 2029년 11월 26일까지임

[표 3] 조사기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1개월당 인건비	531	541	551	561	571	—
	연장 개월 수	7	12	12	12	11	—
	합 계	3,717	6,492	6,612	6,132	6,288	29,241
기본경비	1개월당 기본경비	520	531	542	553	564	—
	연장 개월 수	7	12	12	12	11	—
	합 계	3,640	6,372	6,504	6,636	6,210	29,36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일부추계)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6억 5,5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93억 1,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위원회 운영비	4,298	7,536	7,692	7,848	3,338	30,712
인건비	3,717	6,492	6,612	6,132	6,288	29,241
기본경비	3,640	6,372	6,504	6,636	6,210	29,362
합 계	11,655	20,400	20,808	20,616	15,836	89,315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